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9
------	-----

2023.07.03.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05월 30일, 김동욱 의원(찬성자 4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7.0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욱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개정 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 검토서 작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의 경우 연장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는 중복되어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와 연장 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됨.

#### 나. 각종 위원회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 2022년말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254개로, 조례 신설과 행정사무의 전문화·다양화, 시민수요의 증가, 거버넌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 서울시 각종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원회 수	194	203	217	222	248	254
증감	+9	+9	+14	+5	+26	+6

○ 한편, 지난해 위원회 개최 회의 수는 총 1,994회(위원회당 평균 7.8회)로, 이 중 1회 이하 개최 위원회는 전체의 30%인 76개임(참고자료).

- 특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의 1회 이하 회의개최 비중이 6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1회 이하 개최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개최횟수 설치근거	계	미개최	1회
계	76	39	37
법령	24	10	14
조례	52	29	23

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위원회 설치 불가 사유 추가(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설치요건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와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생략)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직속기관 및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현행	개정안
<p><u>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u></p>	<p>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p> <p>1. <u>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u></p> <p>2. <u>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u></p>

- 현행 조례는 중복위원회만 위원회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회 설치요건을 강화함.
- 이는 위원회 설치 시 기능이 유사·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개정 시마다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되고,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가 많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임.
-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위원회 설치 시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기능 중복 방지의 입법 취지를 조례에 투영함으로써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중복심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에 위원회 설치·구성 방법 등이 다른 경우,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가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 위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설로 운영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li> <li>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li> <li>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 서울시는 위원회의 개최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이 감소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20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2023.3.31.)을 추진함.

-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 25.5%인 65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에 포함됨.

- ◆ 총 정비대상 : 65개 (254개 위원회의 25.5%)
  - (정비유형) 비상설 27개, 폐지 8개, 통합 30개(38개→8개)
  - (정비방법) 조례개정 55개, 법령개정건의 10개

구 분	총계	비상설	폐지	통합
총 계	65	27	8	30(38개 → 8개)
조 례 개 정	55	17	8	30
법령개정건의	10	10	-	-

-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음.
- 다만, 비상설 운영의 예외인 분기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 위원회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회 총괄부서의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음.

(2)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신설(안 제7조제2항)

-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개정 시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검토서 작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현행	개정안
<u>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위원회 신설검토서(이하 "신설검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u>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sup>1)</sup> (이하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에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설검토서 첨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신설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 이는 위원회 신설검토를 통해 위원회 설치를 엄격화함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는 입법효과가 있음.
- 그러나, 의원의 조례안 발의시에도 신설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1) 제2조(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것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입법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위원회 연장 검토서 제출(안 제12조제3항·제4항)

- 개정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기간 만료 6개월 전 연장 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12조제3항), 총괄부서는 연장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 규정은 있으나, 연장시 사전협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위원회 총괄부서와 연장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는 위원회의 존속을 억제하는 입법효과가 있음.

##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설치 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의원 조례안 발의 시에도 신설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입법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에게 입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의원 발의안이나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야 함.
-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 신설검토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하는 단어가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	수정의견
② ----- ----- ----- ----- 신설검토서(이하 “신설검토서”라 한다)를 -----	② ----- ----- ----- 신설검토서를 ----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위원회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의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대상에서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시장 제출 안건만 적용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대상에서 의원 발의안을 제외함(안 제7조제2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9
----------	--------

제안년월일 : 2023년 07월 0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위원회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의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대상에서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시장 제출 안건만 적용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대상에서 의원 발의안을 제외함(안 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포함되는”을 “필요한”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을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으로, “검토한 위원회 신설검토서(이하 “신설검토서”라 한다)”를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 중 “총괄부서는”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위원회 신설검토서(이하 “신설검토서”라 한다)</u>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필요한 -----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④ 총괄부서는 -----</p> <p>-----.</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총괄부서의 장은 -----</p> <p>-----.</p>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원회명	
설치근거	※ 법령상 위원회일 경우 법령, 조례 모두 기재
설치목적	○ -
설치 필요성	
위원회 성격	자문( ), 심의( ), 의결( ) ※ 여러 성격 동시에 가질 경우 중복 표기
설치요건 부합 여부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기존 위원회와 중복·유사 여부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존재 (유□, 무□)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유□, 무□)
상설위원회 설치요건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위원회 필수 구성내용을 조례에 반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구성 및 임기(임기는 상설위원회만 규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 존속기한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input type="checkbox"/>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input type="checkbox"/>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담당부서만 제출)	- 관련 조례 제·개정안 -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자료 등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생 략)</p> <p><u>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u></p> <p>&lt;신 설&gt;</p>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u></p> <p>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p> <p>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p> <p><u>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p> <p>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p> <p>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p> <p><u>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생 략)</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